

[별지 제51호서식] <개정 1999. 3. 23>

국 세 청 (전화번호)			
분 류 기 호 :		년 월 일	
수 신 :		발 신 : 국세청장 [인]	
제 목 :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			
국세기본법 제84조제 3 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2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(☐ 지 급 ☐ 지급제외) 결정을 통지합니다.			
신 청 인	① 단 체 의 명 칭		
	② 대 표 자 성 명		③ 주민등록번호
	④ 주 소	(전화)	
⑤ 사 업 명			
⑥ 신청소요경비		원	원
⑦ 교 부 금 지 급 여부결정일자		. . .	. . .
⑧ 교 부 금 지 급 결 정 금 액		원	원
⑨ 교 부 금 지 급 조 건			
⑩ 교 부 금 지급제외사유			
⑪ 기 타 사 항			

2207-464A

82. 1. 27 승인

210mm×297mm

(신문용지 54g/㎡)